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30 선고 2018가단11297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3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914,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2. 12.부터 2018. 2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**판사심병직**

별지